PATENT ASSIGNMEN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1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	YANCE:	MERGER			
EFFECTIVE DATE:		12/30/2009			
CONVEYING PARTY	DATA				
		Name Execution Dat	ie l		
Pantech & Curitel Cor	mmunications, Inc	. 12/30/2009			
	DATA				
Name:	Pantech Co., Ltd				
Street Address:	Pantech R&D Ce	enter, I-2, DMC, Sangam-dong, Mapo-gu			
City:	Seoul				
State/Country:	REPUBLIC OF K	OREA			
Postal Code:	121-270				
PROPERTY NUMBER	S Total: 1				
Property Type Number					
Property Ty	/ре	Number			
Property Ty Patent Number:	·	Number 13801			
	71				
Patent Number:	DATA	13801			
Patent Number:	71	9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DATA 703288513	13801 9 05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13801 9 05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i>pe sent to the e-ma</i> H.C. Park 8	13801 9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i>via US Mail.</i> Correspondent Name: Address Line 1: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pe sent to the e-ma H.C. Park 8 8500 Leesb	13801 9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Patent Number: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i>via US Mail.</i> Correspondent Name: Address Line 1: Address Line 2: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pe sent to the e-ma H.C. Park 8 8500 Leesb Suite 7500	13801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Associates, PLC urg Pike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i>via US Mail.</i> Correspondent Name: Address Line 1: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pe sent to the e-ma H.C. Park 8 8500 Leesb Suite 7500	13801 9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Patent Number: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i>via US Mail.</i> Correspondent Name: Address Line 1: Address Line 2: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pe sent to the e-ma H.C. Park 8 8500 Leesb Suite 7500 Vienna, VIF	13801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Associates, PLC urg Pike			
Patent Number: CORRESPONDENCE Fax Number: Phone: Email: <i>Correspondence will b</i> <i>via US Mail.</i> Correspondent Name: Address Line 1: Address Line 2: Address Line 4:	71 DATA 703288513: 703-288-51 patent@par patent@par be sent to the e-mar H.C. Park 8 8500 Leesb Suite 7500 Vienna, VIF NUMBER:	13801 9 05 k-law.com <i>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i> : Associates, PLC urg Pike 2GINIA 22182			

502016618

PATENT REEL: 028740 FRAME: 0459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2.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3.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4.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5.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7.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8.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9.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10.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10.tif source=Pantech_Merger_Document#page11.tif

함 법무법인케이씨엘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2010 4 1 -



등부 2010 년 제 10824 호

줋

<u>.</u>

ੁੁ

ó]

위번역자 이 미 숙

날인하였다.

2010 년 4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씨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공증담당변호사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1 1

1st APR 2010.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Signature

is true to the original

Registered No. 2010 - 10824

NOTARIAL CERTIFICATE

Lee, Mi Sook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her) name.

Th	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lst	day
of	APR	. 2010).	at	this	office.	

KIM, CHOI & LIM 80–6. SuSong-dong, ChongRo-Gu, Seoul, Korea

Chr. Won A

Attorney at Law acting as Notary Public

Choi, Won Hyun

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 July 18, 1991 under Law No. 3790.

23230-05711 일 90 . 11. 26 중인

PATENT * 297mm REEL: 028740 FRAME: 0461 서울·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 10층

o 問 법무법인케이씨엘

TEL: 725-4774 FAX: 725-4994 [www.kcilaw.com]

Registered No. 2010 - 10824

NOTARIAL CERTIFICATE

KIM, CHOI & LIM

80-6, SUSONG-DONG, CHONGRO-GU, SEOUL, KOREA



210mm×297mm PATENT ₹) 70g/m² REEL: 028740 FRAME: 0462

Registration No.	076601		Company R	aristration			
Corporation Reg. No.	110111-0766018	•	(Present Particulars				
	110111-010010	L					
Trade name: PANTECH	CO., LTD.			Changed			
Uard Affan - Armark	Com B&D Com	1 7 178		Registered Changed on Apr. 24, 2007			
	Head Office : Pantech Group R&D Center, I-2, DMC, Sangam-dong, Mapo-gu Scoul, KOREA						
Scoul, N	JNLA			Registered on Apr. 26, 2007			
Method of public notice	e 1 Public notice sha	Il he oive	n by publishing the notice in	Changed on Mar. 14, 2003			
	Daily Seoul Econ	omic N	ewspaper, Korean language				
	newspaper publishe	d in Seor	il. 2. In case there is a reason	Registered on Mar. 27, 2003			
			onomic Newspaper or in case				
	law the public not	publiciy	two or more newspapers by be given by publishing the				
	notice in Daily M	Aaeil Eo	onomic Newspaper, Korean				
	language newspaper	r publishe	zd in Seoul.				
	98//www.46/16-02/jown-completentettypypetpetpetpetpetpetpetpetpetpetpetpetpetp						
Par value of each stock:	500won			Changed on Apr. 11, 1998			
~~~~~~~~~~~~~~~~~~~~~~~~~~~~~~~~~~~~~~~				Registered on Apr. 11, 1998			
Total number of stocks	authorized to ha inne	ad h- 11-	n an	Changed on Dec 26 2000			
votar number of MOCKS	2,000,000,000 stocks		company.	Changed on Dec. 30, 2009 Registered on Dec. 30, 2009			
	2,000,000,000 Stocks	) International and an order		Registered on Dec. 30, 2009			
Total nun	aber, kind and			Date of change			
	f stocks issued		Total amount of capital	Date of registration			
Total number of stocks is		Retarke		Changed on Dec. 30, 2009			
commol			823,356,819,000 won	Registered on Dec. 30, 2009			
~~~~~~~~~~~~~~~~~~~~~~~~~~~~~~~~~~~~~~	100000 1,070,710,0			Registered on Dec. 50, 2009			
		OBJ	ECTIVES :	ĦĸĸŎŎŎĬŎŎŎĬŎĸ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Ŏ			
1. Manufacturing, proce	ssing and sales of el	amic	instancest, machinery and	<amended 1994<="" 29,="" mar.="" on="" td=""></amended>			
aparatisand the parts th	rent f		· • • • • •	Registered >			
		telecomn	nunication equipment and	<amended 1994<="" 29,="" mar.="" on="" td=""></amended>			
apparatus and the parts th				Registered >			
3. Renting of electronic a	nd electric machinery	and appa	ratus;	<amended 1994<="" 29,="" mar.="" on="" td=""></amended>			
	A station with the Alexander Street states of			Registered >			
4. Import-export trade an	a otter sneet issuing st	ervice;		<amended 1994<br="" 29,="" mar.="" on="">Registered ></amended>			
5 Manufacturing and wh	miscale and retail cale	of come	uter, its peripheral devices.	<pre></pre> <pre><</pre>			
game machines, and softy			and, as peripheral devices,	Registered on Apr. 03, 2002 >			
6. Real estate leasing serv		·** y		<amended 2002<="" 22,="" mar.="" on="" td=""></amended>			
	and the second se			Registered on Apr. 03, 2002 >			
7. Services related to the	internet and electronic	: commer	cial transaction;	<amended 2002<="" 22,="" mar.="" on="" td=""></amended>			
				Registered on Apr. 03, 2002 >			
8. Any and all item relate	d to the above and inc	idental bi	isiness thereto:;	<amended 2002<="" 22,="" mar.="" on="" td=""></amended>			
			52	Registered on Apr. 03, 2002 >			
	NAMES/	AND AD	DRESS OF OFFICIALS:				
9 m							
Representative Director-			1 5 m	and the second			
Talan attac i		samsung	-Hanarum Apt., Yeomchang-d	ong, taangseo-gu, Seoul-			
Taken office on Apr. 13	*	<u>~</u> ~	Registered				
Representative-Director-			4 W. 4				
vigelo el Aladon -			Apt., Deungchon-dong, Gang				
Taken office on Apr. 13, 1994 (changed address on Feb. 07, 1996; registered on Apr. 01, 1996)							
Reelected on Mar. 29,	1997	Sector of the	Registered on Apr. 07, 19)97			
the issue conformation numi	ber on the issue confirma	ution menu	or not by confirming the bar cod of the internet registry office (ht ssible for five times within three n	e in the bottom with scan or inputting (p://www.iros.go.kr). nonths.			

Date issued: Apr. 01, 2010

Issue Confirmation Number: 6013-AAKR-PVUA

ž

Registration No. 076601	
Representative Director PARK, BY	UNGYEOP
4	#102-1003, Dongsung Apt., 691-1, Deungchon-dong, Gangseo-gu, Seoul
Reelected on Mar. 29, 1997 (changed	d address on Jul. 20, 1998; registered on Aug. 26, 1998) Registered on Apr. 07, 1997
Reelected on Mar. 17, 2000	Registered on Mar. 31, 2000
Representative Director PARK, BYI	UNG YEOP 621230-1*****
1	Rm. 202, 94, Cheongdam dong, Gangnam gu, Seoul
Changed address on May 22, 2001	Registered on May 31, 2001
Reelected on Mar. 14, 2003	Registered on Mar. 27, 2003
Resigned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Taken office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Resigned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Representative Director PARK, BY	UNG YEOP 621230-1*****
Į	Rm. 202, 94,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Taken office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² 5, 2008
Director PARK, BYUNG YEOP	621230-1***** U
Reelected on Mar. 29, 1994	Registered
Reelected on Mar. 29, 1997	Registered on Apr. 07, 1997
Reelected on Mar. 17, 2000	Registered on Mar. 31, 2000
Reelected on Mar. 14, 2003	Registered on Mar. 27, 2003
Resigned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Taken office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Resigned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Taken office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Auditor LEE, DONG WOO	510516-1*****
Taken office on Mar. 17, 2000	Registered on Mar. 31, 2000
Reelected on Mar. 14, 2003	Registered on Mar. 27, 2003
Resigned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Taken office on Dec. 02, 2005	Registered on Dec. 02, 2005
Reelected on Mar. 26, 2008	Registered on Apr. 04, 2008
Director CHO, JOON HO	610225-1*****
Taken office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Director YOO, GWANG SEOB	550123-1*****
Taken office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Director KIM, JOO HWAL	580304-1*****
Taken office on Dec. 01, 2008	Registered on Dec. 15, 2008
Auditor CHO, RAE HYEONG	531201-1*****
Taken office on Dec. 30, 2009	Registered on Dec. 30, 2009
Inside Director YOON, DOO HYE	
Taken office on Mar. 12, 2010	Registered on Mar. 24, 2010
Outside Director PARK, GEUN WO	*#F
Taken office on Mar. 12, 2010	Registered on Mar. 24, 2010
IBACH UNICE ON MAL. 12, 2010	REGISTER ON MAL 24, 2010

OTHER PARTICULARS:

1. Corrected the total number of stock issued entered by mistake in virtue of this office

Registered on Mar. 06, 1995

 Name, Address, and Business office of the stock transfer agent: Kookmin Bank Co., Ltd.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Stock Agency Dept.)

Date issued: Apr. 01, 2010

Issue Confirmation Number: 6013-AAKR-PVUA

PATENT REEL: 028740 FRAME: 0464

A

Registration No.	076601	
Established on	Jun. 20, 1995	Registered on Jul. 07, 1995
1. Discovered mistake	. Correct the date of	f change of stock split-up
		Registered on May 25, 1998
1. Discovered mistake	on Mar. 31, 2000.	Corrected the space of objectives.
		Registered on Apr. 03, 2000
1. Merger		
Merged SkyTeletec	th Co., Ltd. located	at 34-12, Yoido-dong, Youngdungpo-gu, Seoul
		Registered on Dec. 02, 2005
1. Merger	en t. a en e . e a	
	Curitel Co., Ltd. I	located at Pantech Group R&D Center, 1-2, DMC, Sangam-dong, Mapo-gu,
Seoul		
	*****	Registered on Dec. 30, 2009
	*********	CONVERTIBLE BOND:
The 1 st Convertible Bor	ıđ	
<redeemed all<="" in="" td=""><td>on Dec. 10, 2004</td><th>Registered on Feb. 03, 2005></th></redeemed>	on Dec. 10, 2004	Registered on Feb. 03, 2005>
	60 (\$ 100 M)))))))))))))))))))))))))))))))))	BOND WITH WARRANT :
1. Cancelled the 4 th nor all and the exercise of v	1 guaranteed overse	a bond with warrant on Jan 31 2003 in accordance with the redemption in
was many only prever survey of a	/ 642 / 66532	< Registered on Feb. 05, 2003>

ni - ini da se desta de la constante de servem		STOCK OPTION:
1. It mean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tock option may be granted:
according to the provi- meeting of stockholde employees within the ra- related laws and regula	sions of article 340 rs. Provided, howe ange of three- hund tions under the resc	within the range of ten- hundredth $(10/100)$ of the numbers of stocks issued 0-2 of Commercial Law under the extraordinary resolution of the general ever, the company may grant the stock option to the executives and/or lredth $(3/100)$ of the numbers of stocks issued till the limits provided by the oblution of directors' meeting. In this case, the stock option granted under the ders or directors' meeting may be the merit-based stock option controlled by
the goal of business per		
< Changed on Dec. 30,		ered on Dec. 30, 2009>
2. The stock to be of price of stock optic computing the diffe	delivered by exercis on and the current p erence(shall be the mined at the above	ued or transferred by the exercise of stock option: sing of stock option (in case of pa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ercise rice in cash or treasury stocks, this means the stock to be standard for registered common stocks or the registered preferred stocks and the kind of extraordinar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r the
< Changed on Mar. 29,	2007 Register	red on Apr. 12, 2007>

1. Qualifications for granting the stock option for purchase:

Date issued: Apr. 01, 2010

Issue Confirmation Number: 6013-AAKR-PVUA

PATENT REEL: 028740 FRAME: 0465

		1
Registration No.	076601	
		wed the stock op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erson, who had contributed
		logy innovation, etc of company or will contribute and the executives or
employees who are	: belonged to the compa	any or the executives or employees belonging to an interested concern of
the company falling	g under section 1 of ar	ticle 84:-6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Stock Exchange Law. But
the person who is fa	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The rest is the sam under article 10:3-2 Provided that, the (including the exec	ne as above) and the sp 2 of the Enforcement O person who is under the	gest stockholder under article 54:5-4-2 of the Securities Exchange Law. pecial interested person thereof (this means the special interested person ordinance of the Securities Exchange Law. The rest is the same as above). e special interested person as appointed to the executive of the company concern under section 1 of article 84:-6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luded.
		cipal stockholder under article 188 of the Stock Exchange Law. The rest
		rested person thereof. Provided that, the person who is under the special
	-	cutive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xecutive of an interested concern
		rement Ordinance of the Securities Exchange Law) shall be excluded.
3) Person to be a princ	cipal stocknotder by vit	rtue of exercising of the stock option.
		ree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shall not exceed 90/100 of the total inted to the executive and employee shall not exceed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stock issued.		ment in the executive and employee stats not exceed 10,200 by the court
< Changed on Mar.		gistered on Apr. 12, 2007 and and a single
< changed on man	. 29, 2007 - KCĮ	
1. Period of exercising t	he stock option for pur-	chase
		seven (7) years from the date passing two (2) years after the date in the
general meeting for g	· •	
<changed dec<="" on="" td=""><td>2. 30, 2009 Re</td><td>gistered on Dec. 30, 2009></td></changed>	2. 30, 2009 Re	gistered on Dec. 30, 2009>
1. It mean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tock option may be cancelled under the resolution of directors' meeting:
In case of falling under directors' meeting:	the following any item.	, the grant of stock option may be cancelled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executive or employee	retires or resigns voluntarily within 2 years after being granted the stock
option;	· · · · · · · · · · · · · · · · · · ·	
2) In case that a relevan	t executive or employed	e brings about a serious damage to company by accident or intention; or
3) In case that there occ	urs any reason of cance	ellation, which is decided in the stock option grant agreement
<changed 3<="" dec.="" on="" td=""><td>50, 2009</td><td>Registered on Dec. 30, 2009></td></changed>	50, 2009	Registered on Dec. 30, 2009>
Date of company est	ablishment	Mar. 29, 1991
Causes and date of cre	eation of registry form	1 * .
	rticle 2, Paragraph 1 on the old registry for	of Addenda of Rules on Commercial Recording, this registry is
	······································	Registered on Jan. 03, 1995
		No record hereinafter
		tent Registry Office: Commercial Registry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striction of the second seco	ffice: Registry Information Control Center of Court Administrative Office

Received the fee of KRW800

ţ

Date issued: Apr. 01, 2010

Issue Confirmation Number: 6013-AAKR-PVUA

PATENT REEL: 028740 FRAME: 0466

4

	ξ.
Registration No.	076601
	1



This is a certified copy of the Company registration. (Provided that, in case of no request, it is omitted the registration particulars and the registration particulars related to mangers (agents), and branches invalid.)

Date issued: Apr. 01, 2010

Official in charge of computer operation Registry Information Control Center Court Administrative Office (Official Seal of Court Affixed)

* The portions drawn with a full line is the registered particulars erased (amended, revised). It is possible to print in colors.

* It is possible to verify whether the above is true and correct or not by confirming the bar code in the bottom with scan or inputting the issue conformation number on the issue confirmation menu of the internet registry office (http://www.iros.go.kr). The confirmation through the issue confirmation number is possible for five times within three months.

Date issued: Apr. 01, 2010

Issue Confirmation Number: 6013-AAKR-PVUA

6

등기번호 076601	- 등기사항전	부증명서(현	제사항)[제출용
등록번호 110111-0766018				
상 호 株式會社 편택	- And see a second of a second se		···· · · · · · ·	·····································
본 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압동 디엠씨구역 여	아이2블러 편택계열알	앤디센터	<u>2007.04.24</u> 변경 2007.04.25 등 기
제신문에 게재할 이상의 신문에 공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재신문에 게재한다. 하는 경우 또는 법령 우, 서울시내에서 발	에 의해 2	2003.03.14 변경 2003.03.27 동기
1주의 금액 급 500 원		المحمول من المراجع الم المراجع المراجع المراجع المراجع المراجع		1998.04.11 번경 1998.04.11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	00,000 奉			2009.12.30 변경 2009.12.30 등기
발행주식의 총 그 종류 및 각각 발행주식의 총수 1,64		자본의 총역	<u> </u>	변경연월일 동기연월일 2009.12.30 변성
	6.713.638 子	- 7 823.356.819,	000 원	2009.12.30 7.7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동부 동신기계 기구와 동 부속 		<1994.03.29	변경	
 전자 전기 기계 기구의 업 <u>4.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 확</u> 3.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게임 	부서 발행업			동기> 동기> 동기> 동기>
 6. 부동산 임대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립 8. 전기 각호에 관련된 부대서 		<2002,03.22 <2002,03,22 <2002,03,22	변경 2002	2.04.03 동기> 2.04.03 동기> 2.04.03 동기>
대표이사 박병업 서울 강서 1994 년 04 월 13 일 대표이사 박병업 서울 강서-	취입 년 7 등촌동 대립(아) 1	- 101호 월 일 등기 102-702	annana ann an Anna Anna Anna Anna Anna	
1994 년 04 월 13 일 일 동기 1997 년 03 월 29 일	중임 1997 년 (¥ 월 07 임 등기	L.	9)
대표이사 박병엽 서울 강서- 1997 년 03 원 29 일 7 일 등기) 1997 1	년 04 월 0
2000년 03월 17일	중입 2000 년 (8월 31일 동기	an lan selara - Sa sanna ana sa ana sa an sa marana	2 (1996) 199 - 2010 (1975) 1982 - 1993 - 1994 - 199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를 동한 확인은 발	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	HCł.	
000081100110160647000111012051	101B9DABFEBC1F8196709	17 1 반행일:2010/04/0	1 ******* 2008-2009	9.3. 6013-ААКК-РУЦА - 1/5 -
			ĒΔ	TENT
		RE		0 FRAME: 0468

동-기번호	And a state of the second		076	601									
非표어사	ul-	ઝું ભુ	621	230-	-]**	**** 시울	강남	7 3) 당 -	<u>5</u> 9	4 -2	1923	han an dhar an an darth an dhreann ar seanna an seanna an seannach an an seannach an an seannach an dhar an sea Mar
2001				22		주소변경							일 풍기
2003		03	23	14		공업	2003		03		27		
2005			si.	02		사업	2005		12		02		N. 7
2005			2	02		취임	2005				62		<u>~</u> 7
2008		12		01		사임	2008				15		
	PC 118					· · · · · · 서울						1000	
2008						취임							877
기사 바백		6212				5.3.3.4.4.	and all the state		AR- 3449	Vien. In	90 - 364 - 40	X	
1994		03		29		중입		ų					5
1997		03	2	29		중입	1997		()4		07		
2000			ç.	17		중입	2000		03				87 87
2003		03	1001 001	14		중입	2003		03			- 11	
2005	141 -1		워	02		사업	2005		12		02		5 (1) 7
2005		12	1.011	02		취임	2005		12		02		87) 877
2008				01		사업	2008		12		15		
2008		12	- J W.	01		취임	2008	- 217	12	0.0	15		
감사 이용	- 10 40 TO - 10 4	constant on and o	*******	an a				and and the second	8. Sur	and a second s	4 X,J	100 C	
2000		03		17		취임	2000	k,z)	03	Q)	31	Q)	
2003		03		14		중입	2003		03		27		
2005	1.1040	12	Q]	02		사임	2005		12		02		5 7
2005	0.0	12		02		취임	2005		12				
2008		03		26		<u>କ</u> ଥି	2008		04		04	*	
기사 조중	age Canal and a	and descent of the spite	and a strend of	and all and a set of a	and the Assessment		and and the second s	Suyaye A ta Office of Second	67 A	18,25	~ *		
2008		12				취임	2008	ųđ	12		15	QÌ	36.7
기사 유공		samata - ana asar	ward dataward	 Constraints 	and the second	n ang ang ang ang ang ang ang ang ang an		R _{ente} Sadorio Sadorio Sadorio Sadorio Sadorio	19. 2007 19. 2007		and and a second se	XCA Souther of the	ante ante presenta e acontecerente e en entre e constructivaria e a cancela e transfera a al constructiva e con Contecente entre
						취위	2008	ų	12	2]	15	QÌ	10 V
카사 김주	(Q410-1-1-00) -	- new in or gram	- top 1 - commencements	inter an a strength of the strength of the	ANAL TOTAL	A 19-20		*****		1915		Nov Toporotopol	and my hold the grant interaction of the local sector of the
2008						취임	2008	ъĝ	12	-Q)	15	Q)	- <u>5</u> -7]
승사 조리	- 1443 - 2 Sec 2 S	and reduced to the second	General States of St	i na	ana ing kana sa	en e		North Least Charles	- 944 - 2449 - 1464 - 147 - 147 - 147 - 147	Mangan An Anna Anna Anna Anna Anna Anna Anna	-940 54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thin an an third and a start and a start a sta	a na na tha ann ann ann ann ann ann ann ann ann a
						취업	2009	14	12	-81	30	<u>oj</u>	*G. 7]
국내이사		TO THE OWNER OF ME	1999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	encountration to the	and the second	AND ADDRESS INVESTIGATION OF A DESCRIPTION OF A DESCRIPTI			000 1004 100000 10 10 10 1000	NASA MARINE CAN P	egen Ar P Sela - Congeneration	Series () ,	annad Timpering an ann annadame ann an transmar an transmar an transmer an ar an transmer, a transmer, ann an a Annad
						취업	2010	r)	03	-92]	24	ଥ୍ୟ	
나와이사	and the statement	tere of the state of the state		Press of the second sec		mental and a share the second s		naso na nationa na	nar yar Kantarteran na	N.J.		55. 	
							2010	년	03	9]	24		10 7)
	etene, ilio 2000 Ilio anto a com	en der einen der sehen Sindere ander der sehen	4000 ° 1000 and	n nan an a		na ann an ann ann ann an ann an ann ann	••••••••••••••••••••••••••••••••••••••						
1 21.0	~1 -+1	leză ×	31. 4 .8		0	** -1-1		ΙE	3 /	N.	ଞ		
1. 4.7.	43	1~(* `	ei 73	**************************************	34	총수 직권		s of	1587	(2)	1.0	61	\$1 ¹⁰ mg}
1 MAA	1 - 11.	ટ્રો ન્સ	(a) c	101	2.4. 1	1 × 2 m			03		Ub	N.A.	듣기
					181	성,주소 및	6.2	an a					
		4 7 			63 -yi	12 31 50 - 23	计算法输出	1					
<u> </u>	<u> </u>		ci 141	<u> </u>	~~ ^ *	9-1(중권	ru & -		en e sea ple a	and and population		Achonomo e e e e	na 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

방급확인권호 6013-AAKR-PVIA 00008110011015064700011101205101B9DABFEBC1F819670917 1 반영원:2010/04/01 - 2/5 -- 2/5 -PATENT

REEL: 028740 FRAME: 0469

·기번호	076601	
1995 년	06월 20일 설치	1995 년 07 월 07 일 등기
1. 착오발	전 주식분할변경일자	
1 201414	3월 31일 착오발견 -	1998 년 05 월 25 일 등기 르저라 경제
e and the factor	er an er er en en en en en	2000년 04월 03일 동기
· 곱수합병		
서울 영승.	¹ [▲] 거의도동 34-12	주식회사 스카이텔레텍을 합병 2005 년 12 월 02 일 동기
흡수합병		2002 37 37 37 37 37 4002
	바포구 상암동 디헴	씨구역 아이2블릭 펜택계열알엔디센터 주식회사 퀜틱엔취리텔
을 합병		anno 13 10 01 01 01 12 1
an a	na ar - ar an Andrés an an ann an ann an ann an an an Andrés an Andrés Anna an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s a An Anna an Andrés an Andrés an Anna an Anna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s an André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제1회 전환	· 人 · 現	전 환 사 채
		부상환 2005 년 02 월 03 일 등기 >
an an ann an ann ann ann ann ann ann an		신주인수권부사채
1. 2003\1	1월 31일 제4회 무보	중 해외신주인수권부사체 전부상환 및
신주인:	수권행사로 인하여 말	
1997 - Naran I, Marik et Agenyak managakan Merikaka manakak sebakan ana ang aganga	na e a mangagana ang kana kang gana na ang kang k	< 2003 년 02 월 05 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		
*		
이전하 건	우 주신매수서택리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 · · · · · · · · · · · · · ·
수선택권을	- 주주충회의 특별결의	이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 주식때수선택권을 부어할
		-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2009 3	년 12 원 30 일 번	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할 주식(주식몌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2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 포구아는 경구에는 그 사득의 산경기군이 되는 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며, 제1항 소성의
추주광	비 특별결의 또는 이시	·최 결의시 그 종류를 정한다.
		경 2007년 04월 12일 등기 >
. 가야기배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거 사격보건
i auto in faine day in mga lan mga marangana na ang sana na a	an Maran (Marana) and an	발급관인번호 5013-AANR-P

1.181

Co Cr 2.21

4/47

- 3/5 -

PATENT REEL: 028740 FRAME: 0470

 3.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여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책용조의 6 세1 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액 해당하는 자는 세외한다. 1) 카대주주(증권거래법 세63조의 5 제4항 제2호의 카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책4조의 6 세1항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많한다. 이하 같다) 및 북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해요조의 6 세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요구적주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관 있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더 뭘 12 일 동기 > 무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조정한 경우 여자는 중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해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입정한 경우 여사회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감료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암의로 퇴임하거나 외치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구선해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화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대하게 한 경우 3)기는 국식배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na se anno 1990 a chuir an t-ann a' 1970 a t-an	1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종관거래법 시행령 책용1조의 6 세1 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외한다. 11치대루주(중관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중관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세1학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된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 개형화사의 미상근 입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1학에서 진하는 관계회사의 미상근 입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계력법 해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대한,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1학에서 진하는 관계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3)루식때수선택권을 책사의 임원을 도함하여 원의 전문 적 적 지원이 100분의 50분 온 여자 인원 또 직원들 관련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배수선택권을 방행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을 행하는 입 직원의 100분의 50분 온 입관 2007 년 (4 월 12 일 등 7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가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가간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한 여유 의 관을 추여하는 여사회의 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등기번호	076601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종관거래법 시행령 책용1조의 6 세1 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외한다. 11치대루주(중관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중관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세1학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된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 개형화사의 미상근 입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1학에서 진하는 관계회사의 미상근 입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계력법 해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대한,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1학에서 진하는 관계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 1는 책외한다 3)루식때수선택권을 책사의 임원을 도함하여 원의 전문 적 적 지원이 100분의 50분 온 여자 인원 또 직원들 관련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배수선택권을 방행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을 행하는 입 직원의 100분의 50분 온 입관 2007 년 (4 월 12 일 등 7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가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가간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한 여유 의 관을 추여하는 여사회의 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 조심u	1수서태지요 보러빈	을 이 것의요 허사이 선린과 경여 레외여언 또는 기숙현시
항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일적원으로 하되 다음 작호의 1대 해당하는 자는 새외한다. 1)되대주주(중관거래법 제54조의 5 책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발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중관거래법 제58조의 5 책4항 제2호의 규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44조의 6 제1항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2)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받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배수선택권의 해상로 주요주추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상로 유요주추가 되는 자 4. 주석배수선택권은 부여하는 영, 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치원의 100분의 50월 초과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배수선택권은 방행 주석통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등기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등기 > 2008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2 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2 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2 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2 정한 경우 이사회실 적의로 도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즉식태수선택권을 부여책약에서 정한 평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사회 입·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록 전체수 전책수 전책임 200 명하여 구등거용지로 부터이기 1991 년 103 월 29 명 등기 사용 및 면접임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급정에 의하여 구등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5 일 등기 1991 년 103 월 72			
자는 세외한다. 1)최대주주(종권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및 그 특수관계인(중권기래법 세형평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일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54조의 6 세1항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넣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대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2)주요주주(증권기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권기래법 시행령 제54조의 6 제1항에서 집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된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은 부여하는 입 직원의 수는 제직하는 임 지원의 100분의 50월 초과함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동1만에 대하여 부여하는 루석매수선택권은 방행 주석축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04 월 12 일 동기 부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별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과로 주석배수선택권의 부여를 위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 직원이 주석배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결로 회사에 중대한 흔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법 루석대수선택권 부여재약에서 정한 워소사용가 방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건31번 특석대수선택권 부여재약에서 정한 워소사용가 방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서정립연활일 [99] 년 03 월 29 일 여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99] 년 03 월 29 일 경 2009 년 7 월 30 일 동기 > 서정립연활일 [99]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다. 1991 년 03 월 29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500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911 특수대수선택권 부여채약에서 정한 워소사용가 방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911 특수대수선택권 부여채약에서 정한 워소사용가 방생한 경우 (1911 특수대우선 전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기용지로 부터이기 1955 년 01 월 57 등 7 도 000원 영수함 [19] 등 7 등 7 다 01 등 여 백			
1) 최대주주(종권저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저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학의 규징에 의한 특수관계연을 발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체조의 6 제1학 제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통으로써 특수관계연에 해당하게 된사(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한한다.)는 세외한다. 2)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개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체조의 6 제1학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안에 해당하게 전하는 관계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은 부여하는 음 직원의 수는 체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50용 호과함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들 12에 대하여 부여하는 음 적대수선택권은 방행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루주동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남로부터 7년이대의 범 위내해수 행사할 수 있다. < 2007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말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대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말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대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작소의 100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과로 주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5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당해 입 작원이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업의로 퇴임하기나 회적인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업의로 퇴임하기나 회적인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해받은 소재를 가 발생한 경우 2)당해 입 적원이 고의 또는 파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즉석매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2)당해 입 차용의 고의 또 전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서성 적의 고의 또는 파설로 회사에 중대한 유럽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1 년			, μα ματικ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για ματικά ματαγά για ματικ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Παταγματικ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για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ά ματαγ
고 특수관계인(중관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채2항의 급정해 의한 특수관계인을 발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채4조의 6 세1항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계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외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재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입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업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의한디 3)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이용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동기 주식해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동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정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인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때수선택권의 부여를 최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때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입·적원이 후식태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3)기태 주식태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입·적원이 고의 또는 파실로 회사에 중대한 흔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태 주식태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차/3립연혈월 1921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차/3립연혈월 1921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 - GM - F	#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밥하다. 이하같다.)및
발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44조의 6 세1항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안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2)주요주주(중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44조의 6 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안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디 3)루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우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배수선택권의 행사로 유민이어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향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63 원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등거 주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우석배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4. 이하는 주주동회 결의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파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대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석패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 / / / / / / / / / / / / / / / / /			
해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해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개인, 다만, 당해 법인의 일원(중관거래법 시행령 채용조의 6 대1양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개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가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용 초과할 수 없고, 일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석홍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14 월 12 일 동기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입장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흔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석매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2월 명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흔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석매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2월 명이 관의 가실 전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된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주요주주(중관거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독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입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15행세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원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업 직원의 수는 채죄하는 임 직원의 100운의 90용 초과할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매수선택권은 방행 주식홍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동기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의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범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입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소할 수 있 다. 1)당해 입·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입·적원이 로의 또는 파실로 회사에 중대한 흔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석매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951 년 03 월 29 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55 년 01 월 05 일 동기 도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19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주요주주(중권거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중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1항에서 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여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재위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입·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용 초과할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향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A BOR HAVE AND A HAR A HER A HER A HER A HER A HER A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량 채서소의 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용 초과할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동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매수선택권은 방행 주식총수의 16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등기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범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입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되임하거나 되지만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사성립연월일 1)12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지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해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개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식태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태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식태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일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용 主과함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방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A 월 12 일 동기 주식태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입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좌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정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가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동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가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동기			
된 자(그 임원이 객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세외한다 3)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죄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용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매수선택권은 방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04 월 12 일 등기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6 일 동기 > 입장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주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루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1991 년 03 월 29 일 가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4. 주석폐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입.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입.적원의 100분의 90용 主과혈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석폐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된	자(그 임원이 개열	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호과철 수 없고, 입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04 월 12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입.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업의로 퇴임하거나 되직한 경우 2)당해 입.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둥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도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주식홍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04 월 12 일 등기	4. 주석비	#수선택권을 부여하	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용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04 월 12 일 동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박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대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용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동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동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主种	이수 없고, 임원 또	또는 직원등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범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주식형	· · · · · · · · · · · · · · · · · · · ·	초과할 수 없다.
주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종회 결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범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석매수선택권의 부여들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 2007	년 03 월 29 일	변경 2007 년 (4 월 12 일 등기 _{+ 중 the charge 1})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둥기 > 사성립연월일 합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주식대식	는선택권의 행사기간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대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동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주쉬매수	선택권은 이를 부여	하는 주주중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의 법
입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작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당해 입.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동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2009	년 12월 30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다. 1)당해 임.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둥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1)당해 임,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신의 1에 해당하는 기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맥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둥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둥기 료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기타 주식패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일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로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입의로 퇴임하기나
3)기타 주식패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9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 이하여 백			Berlin, C., D. C. Berlin, a second a C. Berlin, and S. Berlin, and S. Berlin, S. Berlin, S. Berlin, S. Berlin,
<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둥기 >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9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둥기 료 800원 영수함			
사성립연월일 1991 년 (03 월 29 9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동기 료 800원 영수함 이 하 여 백			
·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이하여 백	< 2009	<u>12 12 12 30 12</u>	면 73 2009 년 12 월 30 일 풍기 >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회사성립언		1991 년 03 월 29 영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동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물	
1995 년 01 월 03 일 등기 료 800원 영수함	상의	d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표 800원 영수함 이 하 여 백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치 등기정보중앙관여	수료 800원	영수학	
		관할등기소 : 서울링	<mark>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mark>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치 동기정보중앙관리



 등기번호.	
	 αν ηξεία του σε πτροποιομού και σκατοποιομού κατοπορογογιασμού στο μετάχου μαριό ξομού της του του στο του στο το στο σ

